



2025년도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입 원아모집 및 입소 안내

1. 2025년 오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신입 원아모집 일정 안내

가) 신청기간 : 2024년 11월 1일(금) 오전 10시 까지

나) 신청방법 : [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\(www.childcare.go.kr\)](http://www.childcare.go.kr)에 입소대기 등록

다) 입소절차

입소대기 → 배점심사 → ①입소확정 및 통보 → ②서류제출(1, 2차) → 최종입소

① 입소확정

2024년 11월 1일(금) 10:00 ~ 11월 7일(목) 18:00 기한 내 개별 통보

※ 대기아동 상황에 따라 추가 확정 일정 및 방법은 어린이집별 추후안내

② 서류제출

■ 1차 서류제출일 : 입소 확정 후 7일(휴일포함) 이내

- 서류 발급기준일 2024년 11월 1일자부터 유효함
- 해당 어린이집에 원본 서류 제출
-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혹은 자격미달시 입소확정 취소될 수 있음

■ 2차 서류제출일 : 2025년 2월 24일(월) ~ 2월 28일(금) 18:00 까지

(2차 서류 제출용 발급기준 일자 - 2025년 2/24~2/28일까지 발급일에 한함)

라) 유의사항

-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,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
- 서류는 2024년 11월(1차 제출)과 2025년 2월(2차 제출)에 2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1차와 2차의 서류는 동일한 자격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입소순위 **자격서류 미제출,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 변동 시 입소확정이 취소 될 수 있음**을 알려드립니다.

2. 시립○○○○어린이집 신입원아 모집 인원

- 만 0 세 : 2024. 01. 01. ~ 2024. 12. 31. (명)
- 만 1 세 : 2023. 01. 01. ~ 2023. 12. 31. (명)
- 만 2 세 : 2022. 01. 01. ~ 2022. 12. 31. (명)
- 만 3 세 : 2021. 01. 01. ~ 2021. 12. 31. (명)
- 만 4 세 : 2020. 01. 01. ~ 2020. 12. 31. (명)
- 만 5 세 : 2019. 01. 01. ~ 2019. 12. 31. (명)

3. 원서접수 입소순위 및 제출서류 안내

순 위	구 분	제 출 서 류	제출 구분	점수	
1 순 위	수급자	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			
	한부모가족	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			
	차상위계층	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			
	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	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			
	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	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			
	다문화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등본 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: 출입에 관한 사실 증명 (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)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출입국관리사무소)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	중 1부 필수	100	
	제1형 당뇨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단서 의사소견서 (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기재) 	필수		
	국가 유공자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스템 자동연계 (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&가족관계증명서) 	필수		
	다자녀 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* 2자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연령 제한 없이 우선순위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: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	중 1부 필수	100	
	임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단서, 소견서,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, 임신확인서 (임신확인일, 출산예정일, 병원명, 병원직인,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) 	필수		
	북한이탈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	필수		
	맞벌이 가구	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	중 1부 필수	200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(근로복지공단)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	중 1부 필수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.임금확인서 (3개월 이상 이체내역) 		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금액증명원 •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		
		대학원생	재학증명서 ※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	필수	
		취업 준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·수료증 •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(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) •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•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※ 구직활동 증명서류: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, 실습확인서, 해당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.이수 및 학원 수강증 (출석 수업에 한함)	중 1부 필수	
		예술인	• 예술인활동증명서 ※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	필수	
	자영업자	공통	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	필수	
		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 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•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	중 1부 필수	
		신규 자영업자	※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• 소득신고 증빙서류 (세무서 접수증 등) • 사업장 매출 장부 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) •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	중 1부 필수	
		농어업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(어)업인 확인서 • 농(어)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• 어선원부등본 • 기타 농.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	중 1부 필수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계약서 • 판매증명서 •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	중 1부 필수	
2순위	기타 한부모가족	• 가족관계증명서	필수	50	
	조손 가족	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	필수		
	입양된 영유아	• 입양확인서	필수		
	가정위탁 보호아동	• 가정위탁보호확인서	필수		
	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·자매	• 형제·자매 재원확인 * 단,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	필수		
추가배점	맞벌이(200)+3자녀이상(200)+추가배점(300)			700	

『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』 적용원칙

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 모두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 - 취업의 기준 :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
 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(자영업자 포함)
 - 한 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 - 휴직자*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 - * 다만, 육아휴직자의 경우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.
 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
- 취업준비자
 -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
 - 구직 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,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 등록 확인증 상 **7일 이내**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(서류상 확인)
- 자영업자
 -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
 - *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
 - 신규 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
 -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. 다만, 농·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
- 예술인
 - 『예술인 복지법 시행』령 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
 - ※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
- 대학(원)생
 -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등) 불인정
-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